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9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정희용ㆍ권명호ㆍ정진석

송언석 • 구자근 • 태영호

이채익 · 윤재옥 · 이명수

김용판 · 허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유효기간 만료일(20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

18년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2018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부지를"을 "부지(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성비용을 기부채납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로 한다.

제30조의2제5항 중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한다"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를 "제11조제1항제5호의2"로, "2020년 12월 31일 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
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지 정비사업)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u>시설</u>	시 <u>설</u>
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	(2018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시행할 수 있다.	<u>한정한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	③
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	
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	
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	
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	
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u>부지를</u> 기부채납하여야한다.

④ ~ ⑧ (생 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7 (생 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 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u>중지하되, 이미 부과된</u>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 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

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성
비용을 기부채납 금액에 포함하
여 산정한다)를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징수할
<u>수 있다</u>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 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underline{M4}$ 조의2, 제 | 제2조(유효기간) ① $\underline{M11}$ 조제1항 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 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2023년	
<u> 2020 E</u>	
<u>.</u>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호의2-----2020년 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 및 제 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② (현행과 같음)